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1049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43조제1항(자동차검사), 제43조의2(자동차 종합검사) 및 『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』 제12조(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)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　　목: 자동차 종합(정기)검사명령서(26년10월)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: 12도07**(김*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) 등 30대(붙임 참조)
3. 공고기간: 2026.10.30. ~ 2026.11.14.(15일간)
4. 처분사항

귀하(사)의 자동차는 종합(정기)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『자동차관리법』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·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2026년 11월 25일까지 가까운 검사소에서 종합(정기)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『자동차관리법』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**자동차 운행정지**가 될 수 있습니다.

※ 또한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84조제4항15의4, 같은법 제84조제4항15의5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 문의처: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 (052-209-3705)

2026. 10. 30.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